

중국연구소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명칭 및 위치) 본 연구소는 본 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부설 중국연구소(이하 “본 연구소”라 한다)라 하며,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내에 둔다.

제2조 (목적) 본 연구소는 소속 교수들의 중국 관련 학술교류사업 및 중국어학 분야 연구 출판 등을 목적으로 하며, 중국어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특강, 자격시험 등을 실시한다.

제3조 (사업)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- ① 학술교류 및 연구사업: 중화권 국가 대학과의 학술교류 및 연구사업을 시행한다.
- ② 중국어 관련 출판: 중국 및 중국어교육에 관련된 저서, 자료 등을 출판한다.
- ③ 중국어교육 및 자격시험: 중국어교육 및 자격시험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시행한다.
- ④ 중국 선교 관련 사업: 중화권 국가의 선교에 관한 자료의 조사, 분석을 시행한다.

제2장 조 직

제4조 (구성) 본 연구소에는 소장 1명, 연구원 및 간사, 조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이를 임명한다.

제5조 (운영위원회) 본 연구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. 운영위원은 본 대학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6조 (운영위원회 임무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기본운영 계획
2. 연구 및 학생 상담과 지도의 계획
3. 연구계획,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열 평가
4. 기타 연구소 운영상의 중요사항.

제 3 장 재 정

제7조 (재정) 본 연구소의 재정은 본 대학교 연구비, 외부연구비 및 기타 기탁금 등으로 충당한다.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에 준한다.

제8조 (연구소의 지원 및 관리) 연구소의 지원 및 관리는 본 대학교 연구비 지원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- ① (규약의 개정)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.
- ② (기타사항)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신학대학교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.
- ③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